

울산지방법원 2023. 9. 6 선고 2022가단12559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7. 12.

판 결 선 고 2023. 9. 6.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2. 5. 16.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22. 5. 17. 접수 제21679호로 마친 10번C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22. 5. 17. 접수 제2167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사 이준영

[별지 목록]

1. 경상남도 양산시 대 345 m²

2. 위 지 상

경상남도 양산시 내지 1층 호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양산시

시멘트벽돌조스라브층2층 연립주택

1층 142.38 m²

2층 140.40 m²

내지층 호 47.5 m²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내지층 호

시멘트 벽돌조스라브층 47.5 m²

토지의 표시

경상남도 양산시

대 345 m²

총 공유자 지분 345분의 58

끝,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부실채권을 매입, 회수하는 법인체로서 소외 C(이하 '소외인'이라 한다.)에 대한 양수금 채무에 대하여 각각의 양수도계약을 거쳐 최종양수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피고는 소외인의 배우자로서 소외인으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합니다.)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약의 수익자입니다.

2. 양수금채무

소외인은 소외 D 주식회사로부터 대여금을 받은 후 원금 및 이자의 변제를 이행하지 않아 기한의이익이 상실되었습니다.

3. 채권양도,양수계약

위 채권은 2007.11.27. 채권매매계약에 의해 소외 D 주식회사에서 소외 E 주식회사로 양수되었고, 그후 2008.12.24. 채권매매계약에 의해 소외 유한회사 F로, 2019.08.30. 자산양수도계약에 의해 원고에게로 최종 양수되었습니다.

4. 채권양도통지

소외 D 주식회사는 2008.01.08. 소외 E 주식회사는 2009.01.09. 소외 유한회사 F는 2020.01.20. 채권양도통지서를 각 발송하였습니다.

5. 그런데, 원고는 아직 변제받지 못한 양수금 채무를 변제 받고자 소외인의 유일한 재

산인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보전절차를 취하고자 하였으나 동 부동산은 이미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2022년5월17일.접수 제21679호로 이전된 후였습니다.

6. 피고와 소외인의 사해행위 취소에 의한 소유권이전 말소 청구

(가) 원고는 금번 소외인의 재산을 추적 조사하던 중, 이 사건 부동산을 발견하였고 소외인은 별지목록 각 기재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이미 본인의 채무금이 과다함을 알고 있었으며, 이와 같은 채무상태에서 본인의 채무를 면탈하고 채권자의 채권확보를 어렵게 하고자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이전한 것은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 그러므로 소외인은 본인의 채무는 변제하지 않고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공동담보의 부족이 생겨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또한 피고는 위와 같은 사해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면서 한 악의의 수익자입니다.

(다) 피보전 채권의 존재 및 성립

소외인은 2013.10.02. 양수금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전195533 양수금)에 의하여 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행위가 성립되었고 이 사건 사해행위는 2022.05.16.자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라) 채무초과에 대하여

이 사건 사해행위 당시 소외인의 소극재산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전195533 양수금 사건 기준으로 9,381,885원이 존재하는 반면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한 부동산으로 이를 피고에게 증여하여 넘김으로 채무초과상태였다고 할 것입니다.

7. 결어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 전부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사해행위의 대상이 된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에 원고는 사해행위인 피고와 소외인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을 취소하고, 사해행위 결과에 대한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청취지와 같이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합니다.

